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김 관 수
- 질문방법 : 서면질문
- 질문내용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또한 1인 2역의 역할로 분주히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부천시와 시민을 위하여 정열적으로 시정을 이끌고 계신 방비석 부천시장권한대행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과 애정을 언제나 함께 드리는 성곡동 주민과 85만 부천시민께도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오늘 부천시의회 제111회 임시회의에서 85만 부천시민이 위임하여 준 시 집행부에 대한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은,

첫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 관내 학교 주변 폐쇄회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및 지역치안 예방차원으로 설치할 용의에 대한 질문으로 부천시 관내 109개 초·중·고 학교 부근에 CCTV를 설치하여 관리는 학교에서 하고 지역에서 청소년 폭력 없는 예방목적으로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에서 유통된 일반음식점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일일 부천시 관내에 공급되는 약 20만 개의 위생물수건과 위생도마, 행주 등의

대장균 검출 조사와 인체에 해로운 표백제인 가성소다를 사용한다는 제보가 있는데 시장께서는 관련부서에 월 1회 정도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무작위 수거 후 조사하여 지도하고, 시민의 환경 위생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번째 질문입니다.

구 차량등록사무소 자리 앞인 도당동과 성곡동 경계 지역인 현재 상오정길과 하오정길이 교차되는 사거리에 신호등 설치에 관한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몇 년 전부터 신호등 설치에 대해 집단민원이 제기되었으나 담당 교통행정과에서는 출퇴근시 차량정체 원인을 이유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 설치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본 의원의 의견은 북부천전화국 앞 신호등과 여월초등학교 앞 신호등, 새로 설치될 본 의원이 지적한 지점의 신호등을 함께 연동식으로 작동한다면 가능하리라는 의견인데 부천시의 교통정책은 차량우선정책인지 보행자우선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 현장조사 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신호등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격에 관한 사항을 집중 질문하고 이사장 해임을 요구하면서, 전문경영인을 도입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활성화할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분 자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1999년 7월 1일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부천

시 소속 파견 서기관 4명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공무원 파견 법적근거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조례 제29조에 의하여 파견하고, 인사평정관리는 동조례 제30조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공무원 파견목적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공무원을 파견하게 되었으며 또 우리 시의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방안으로도 일부의 파견목적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이사장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직을 파견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 앞에서 또 85만 민주 부천시민 앞에서 고하는 질문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분을 시 집행부에서 관련 법규나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을 너무 너그럽게 인지하여 자격이 없는 자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개탄하면서 즉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해임시킬 것을 부천시장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해임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제4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2003년 2월 20일 부천시 소속 4급 공무원으로 파견하여 공무원 신분으로 동년 2월 23일 이사장에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장은 2004년 1월 31일자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부천시 소속 파견 4급 공무원)에게 문서번호 총무과 - 1488호 공문으로 시설관리공단 파견근무를 면하고 부천시 행정지원국 총무과 근무를 명함과 동시에 그 직을 면하였음을 알리는 공문서를 의회사무국장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발송하였습니다.

파견된 공무원의 그 직을 면하였다면 당연히 공무원 신분으로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어 부천시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 파견을 면하고 본청으로 다시 복귀하였음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써 법률적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률적 자격 부분에 대하여 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는 부천시 고문변호사는 부천시 파견 공무원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시 본청으로 복귀하여 명예퇴직하였다 해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자격이 인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검토의견이 있으며, 1명의 고문변호사는 공무원파견은 그 직위 자체가 파견이기에 본청으로 복귀하여 퇴직하였으면 이사장직 승계는 절대불가로 법률자문이 있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넓으신 아량으로 해석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행정편의주의 속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85만 부천시민 여러분!

소위 힘없고 백없는 많은 시민들에게도 시 집행부에서는 민원부분에 대해서 넓은 아량으로 대하여 주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절대로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관련규정 따지고 법규는 따지면서 무 자르듯 싹둑 잘라 처리하면서 내부적인 일에는 이렇게 너그럽게 처리한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부분과 사실 정황에 의거 2004년 2월 10일에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경영지원팀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파견된 부천시 소속 직원이 명예퇴직한 경우에 있어서 이사장으로서의

신분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2004년 3월 4일에 행정자치부 경영지원 175호 질의내용 회신에 의하면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및 제66조 규정에 의거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자치단체장이 임명하여야 된다고 회신하였으며, 본 의원과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경영지원팀 담당자와 30분 이상 전화에서 오간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입법취지는 공기업에 공무원 파견은 지방공기업 설립 초기나 또는 특정의 사유로 인하여 운영에 관해서 개입하여야 될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 겸직을 배제한다고 하였으며, 지방공기업의 특수사정상 이사장직무대리는 파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사장 파견은 불가능하다 하였으며, 전국에 있는 많은 지방공기업 중 지방공무원이 파견하여 있는 사장이나 이사장은 없다고 하였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파견 자체가 지방공기업법 입법취지와 정반대되는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사정상 이사장추천위원회에 추천 없이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리 파견은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재의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법률적 신분이 이사장 자격이 없는 신분이기엔 임명권자인 부천시장께 즉각 해임을 요구함과 동시에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비전문 경영인으로 현재의 시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상임이사도 함께 교체하여 전문경영인 공개모집으로 상임이사를 채용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을 전국 최고의 지방공기업으로 다시 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대로 지방공기업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부천시 소속 4급 공무원을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리로 임명하여 공단을 활성화시킬 시기를 앞당기면서 공단 내부적으로 이사장직무대리는 대표권을 갖고 공단경영은 일정기간 동안 부천문화재단과 같은 내부 인사권 및 결재권은 전문경영인 상임이사를 영입하여 활용한다면 부천시와 시설관리공단 모두에게 만족감이 주어지리라 보며 일정기간 동안 이러한 체제로 운영하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정상적인 궤도에 도달하고 행정자치부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도 상위권 안에 진입할 때에 이사장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부천시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께서 앞서 지적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파견 공무원을 퇴직 후에도 계속 이사장직을 고집하고 법률 해석을 객관성 있게 하지 못하고 미지근한 답변내용으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해임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을 경우 분명히 밝혀두지만 본 의원은 개인자격은 물론 법률적 지위 안에서 부천시의 상급기관인 중앙감사원과 행정자치부 감사 담당관실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에 대한 공무원 파견 등 부당하게 운영하여 온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요구하여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본 의원의 지적과 제안내용으로 부천시와 시설관리공단 발전을 위한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성실한 답변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이 옥 수
- 질문방법 : 서면질문
- 질문내용

1. 부천시 관내 중학교 교육환경 개선대책은?

부천시 관내에는 29개교의 중학교가 소재하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원미구 17개교, 소사구 29개교, 오정구 4개교입니다. 그러나 이들 학교들은 일부지역에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원미구 심곡동과 원미동, 소사구 심곡본동과 소사본 1, 2동, 오정구 원종1, 2동과 고강본동 고강1동 지역에는 중학교가 없음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하게 됨에 따라 중학교가 부재한 구도심권의 학생들은 동간 경계는 물론 구간 경계를 넘어 등하교함에 따라 시간소비에 따른 불편은 물론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은 중학교 단일학군으로 근거리 배정 원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학교배치 불균형으로 인하여 구도심권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부천교육청에 의하면 2008년 부터는 학급당 학생수를 30명으로 계획하고 있어 현재 확보된 학교수로는 70%정도만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학교부지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책들은 부천시가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예산과 학교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학생들의 등하교를 고려하지 않고 행정편의에 입각하여 일부지역에 편중시킨 행태로 이로 인한 불편은 시민들이 떠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부천시에서는 단계적인 학교부지 확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중학교가 없는 구도심권의 부지를 확보하여 학교를 신축할 경우에는 지하는 주차장으로, 지상은 학교로 활용하다면 구도심권의 교육환경 개선과 주차난을 해결함으로써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편중된 학교는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먼저 구도심권의 학교부지를 확보하고 현재의 학교부지를 타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점을 명심하시어 21세기 주역들이 등하교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황 원 희

□ 질문방법 : 서면질문

□ 질문내용

1. 공영노외주차장(4호, 6호)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도심 및 상가 밀집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용주차전용건축물 민자유치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는 제4호와 제6호 공영노외주차장 2개소를 시범적으로 민간투자사업추진 방식으로 공용주차전용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음.

1) 부천시의 공영노외주차장 민간투자사업의 기본방향은?

- 구체적인 계획서 및 용역결과가 있으면 용역결과보고서 제출

2) 현재 추진중인 제4호와 제6호 공영노외주차장 민간투자사업의 기본구상과 이에 따른 제안 신청업체 현황, 현재까지의 추진과정과 각 과정별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은?

3) 제4호와 제6호 공영노외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은?

2. 경인옛길과 경인국도 연결도로 확장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경인옛길과 경인국도를 연결하는 소로(소사동 70-12 ~ 70-15번지 일원) 확장공사는 2002년도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완공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소사구 소사동 70-12번지 일원의 소로(4M) 확장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대책,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3. 경인옛길과 소사동 132-1번지 보도 확보 용의는?

- 소사구청 앞에서 소사삼거리까지의 경인옛길에는 도로 양측에 일부 지역에 사도로 조성된 극히 좁은 보도만 있을 뿐 공공용지로 확보된 보도가 없어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음.
- 소사삼거리 앞 소사동 132-1번지의 건축물이 보도를 점유하고 있어 보도 통행이 불편하고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음.

- 1) 경인옛길 소사구청 앞에서 소사삼거리까지의 구간에 시민의 통행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보도를 조성할 용의는 ?
- 2) 소사구 소사동 132-1번지의 건축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보도를 확보하고, 잔여지는 썸지공원으로 조성할 용의는?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김 혜 성

□ 질문방법 : 서면질문

□ 질문내용

1. 노점상 근절대책에 대하여

가. 노점상 단속 용역비를 추가 확보할 용의는?

나. 생계형 노점상 관리대책은?

다. 노점상 관련 조례제정 등 효과적인 노점상 관리방안은?

2. 도로상 시설표지판 정비촉구 및 주요건축물 안내표지판 확충용 의는?

3. 불법광고물 단속 및 광고물 정비를 위한 제도마련 용의는?

4. 원미구청 옆 소공원(민방공대피소) 지하공간을 지하주차장으로의 시설개선이 필요한 실정인데 아직까지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안 익 순
- 질문방법 : 서면질문
- 질문내용

1.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계획은?

- 부천시민도 이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10조, 제34조, 제35조) 등 쾌적한 주거환경에 관한 시민의 법적권리가 회복되어야 함.
- 그러기 위해 부천시는 주택정책이나 새로운 주거단지 계획, 구도심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의 문제들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한 법적권리를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 1) 구도심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발주를 최대한 조속히 실시할 용의는?
- 2) 그 동안 도시계획 측면에서 간과된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도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도심을 대상으로 한 재개발구역 지정하고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3) 부천의 어메니티 프랜(Amenity Plan)의 구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 4)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규모 단지의 재건축을 난개발 방지를 위해 위에서 언급한 종합적인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중지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부천테크노파크 R/D센터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는?

○ 부천테크노파크 R/D센터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유치전략에 관한 용역보고서가 2003년도 5월에 부천시에 납품된 바 있음.

- 1)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부천시 산업구조를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개편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한 실태조사 및 효과적인 R/D센터 유치전략이 수립되어 있는지?
- 2) 부천테크노파크에 유치하는 업종이 고부가가치산업을 추구하는 부천의 지역특성과의 연계는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첨단산업 일변도의 특화전략이 부천시 미래 산업기반 구축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지?
- 3) 부천 소재 기업의 정보화 촉진과 국제경쟁력 강화,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 산학연관의 협력체계 구축은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현황은?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윤 건 웅
- 질문방법 : 서면질문
- 질문내용

1. 우리 시의 그린벨트 해제는?

- 가. 해제대상 및 면적은?
- 나. 그동안 경기도와 협의한 내용을 일정별로 밝혀주기 바람.
- 다. 해제가 늦어지는 이유는?
- 라. 앞으로의 대책 및 해제시기는?

2. 불법주차차량 견인보관소 운영은?

- 가. 개소일시/면적/주차면수/현재 위치에 설치한 이유/ 운영방법
은?
- 나. 이전 용의 및 계획은?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김 덕 균

□ 질문방법 : 서면질문

□ 질문내용

- 부천시는 예산의 전출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그 이자수입 등으로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15개 기금 473억원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부천시의 기금 중 상당 금액의 기금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한미은행이 최근 외국인이 운영하는 은행(시티은행)으로 양도된 것으로 알고 있음.

- 1) 부천시의 15개 각 기금마다 예치되어 있는 은행별 예치내역 / 금리 / 이자수입 내역은?
- 2) 15개 기금중 외국인에게 양도된 한미은행에 예치한 기금내역과 즉시 이를 모두 회수하여 국내은행에 재예치 할 용의는?
- 3) 현재 한미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기금을 회수하여 국내은행에 재예치할 경우 이에 따른 문제점, 기금운용실태 분석 및 향후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오 세 완
- 질문방법 : 서면질문
- 질문내용

1. 체납세 징수대책은?

- 2003년도 부천시의 체납액은 250여 억원으로써 연간 지방세 징수목표액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원천적인 체납액 징수방안이 절실히 요구됨.
- 2004년도에는 특별징수 전담반을 별도로 신설하거나 현재 인원 보다 대폭 증원하여 운영할 의향은?
- 또한, 2003년도에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징수방안 조치실적 및 징수실적을 밝혀주시고, 고액체납액 징수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의향은?

2. 원자재 공급난에 대한 대책은?

- 최근 철근, 시멘트 등 건설 및 산업 원자재의 공급부족이 매우 심각한 실정임. 이로 인한 부천시 관내 관급공사를 비롯한 건설공사와 관내 산업체의 생산활동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바, 그 예상피해 규모와 그에 대한 중앙정부와 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